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규정 개정 관련 검토 협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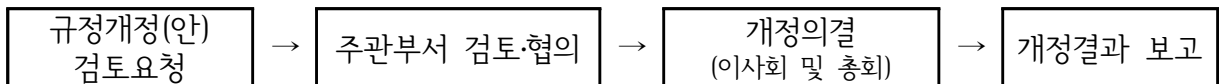
1. 서울시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센터 규정을 개정하고자 사전 협의 요청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센터 보수규정

나. 개정사유 및 내용 :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제규정의 제한)에 따른 연봉공개에 따른 제제기준 개정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16~'18)에 따른 연봉 상하한액 조정
-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개정절차



붙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개정(안) 1부. 끝.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팀장 김재범 부장 한태석 사무국장 (06/11)김의욱

협조자

시 행 경영기획부-1355 2018-06-11 접수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 홈페이지 <http://volunteer.seoul.go.kr>

전화 (02)2136-8715 / 전송 (02)2136-8702 / 이메일 Jaebeom.Kim@volunteer.seoul.kr / 비공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개정(안)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관계 법령과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근거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16~'18)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제규정의 제한)

개정내용

- 보수규정 : 연봉공개에 따른 제제기준 개정 및 연봉 상·하한액 조정
 - 센터 보수규정 14조(징계처분자의 연봉) 1항 5호에서는 타인의 연봉 공개시 본인 기본연봉의 4%를 감하도록 하고, 감액된 총금액은 3개월 균등 분할하여 감액토록 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제를 정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연봉의 4%를 감액하고 그것을 3개월 균등분할 시 월감액 최대액이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어
 - 감급조치 중 균등 분할 개월 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 ※ 근거 1. 근로기준법 제95조(제제규정의 제한)
 - 2.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취업규칙 검토의견서

- 직급별 연봉 한계액 기준에 관한 사항 : 매년 고시되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보수 규정 상 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했어야 하나, '15년 보수 현실화를 반영한 연봉 상·하한액 개정 이후 현 '18년까지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유보시켜온 바
- 그간의 서울시 고시연봉 인상률 적용 등이 누적되어 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19년부터 상·하한액 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16년부터 '18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직급별 연봉 한계액을 조정하고자 함.

연 도	2016	2017	2018
총 인건비 인상률	3%	3.5%	2.6%

※ 근거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16~'18)

행정사항

- 규정개정 절차 : 시 주관부서 사전협의 → 이사회 의결('18.6.22, 예정)

- ※ 붙임 1. 보수규정 신규대비표 부.
- 2. 관련근거 1부. 끝.

【붙임 1 : 관련근거】

보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45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등의 경우에는 강등된 신분을 감안하여 센터장과 연봉재계약을 실시하며, 정직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본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 5. 타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40%를 감하여 지급한다. <p>② 제1항의 4호 및 5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 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감액한다.</p>	<p>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4호 및 5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감액한다.</p>																																																																				
<p><별표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직급별</th> <th rowspan="2">하한액</th> <th rowspan="2">상한액</th> </tr> <tr> <th>직종</th> <th>직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직</td> <td>센터장</td> <td colspan="2">서울시에서 정함</td> </tr> <tr> <td>1급</td> <td>39,900</td> <td>66,150</td> </tr> <tr> <td rowspan="2">·</td> <td>2급</td> <td>37,600</td> <td>65,670</td> </tr> <tr> <td>3급</td> <td>34,210</td> <td>62,680</td> </tr> <tr> <td rowspan="2">계약직</td> <td>4급</td> <td>30,620</td> <td>59,500</td> </tr> <tr> <td>5급</td> <td>27,130</td> <td>55,140</td> </tr> <tr> <td rowspan="2">·</td> <td>6급</td> <td>23,520</td> <td>50,620</td> </tr> <tr> <td>7급</td> <td>21,290</td> <td>46,340</td> </tr> </tbody> </table>	직급별		하한액	상한액	직종	직급	일반직	센터장	서울시에서 정함		1급	39,900	66,150	·	2급	37,600	65,670	3급	34,210	62,680	계약직	4급	30,620	59,500	5급	27,130	55,140	·	6급	23,520	50,620	7급	21,290	46,340	<p><별표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2안, 기본인상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직급별</th> <th rowspan="2">하한액</th> <th rowspan="2">상한액</th> </tr> <tr> <th>직종</th> <th>직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직</td> <td>센터장</td> <td colspan="2">서울시에서 정함</td> </tr> <tr> <td>1급</td> <td>43,641</td> <td>72,353</td> </tr> <tr> <td rowspan="2">·</td> <td>2급</td> <td>41,126</td> <td>71,828</td> </tr> <tr> <td>3급</td> <td>37,418</td> <td>68,557</td> </tr> <tr> <td rowspan="2">계약직</td> <td>4급</td> <td>33,491</td> <td>65,079</td> </tr> <tr> <td>5급</td> <td>29,674</td> <td>60,310</td> </tr> <tr> <td rowspan="2">·</td> <td>6급</td> <td>25,725</td> <td>55,367</td> </tr> <tr> <td>7급</td> <td>23,286</td> <td>50,685</td> </tr> </tbody> </table>	직급별		하한액	상한액	직종	직급	일반직	센터장	서울시에서 정함		1급	43,641	72,353	·	2급	41,126	71,828	3급	37,418	68,557	계약직	4급	33,491	65,079	5급	29,674	60,310	·	6급	25,725	55,367	7급	23,286	50,685
직급별		하한액			상한액																																																																
직종	직급																																																																				
일반직	센터장	서울시에서 정함																																																																			
	1급	39,900	66,150																																																																		
·	2급	37,600	65,670																																																																		
	3급	34,210	62,680																																																																		
계약직	4급	30,620	59,500																																																																		
	5급	27,130	55,140																																																																		
·	6급	23,520	50,620																																																																		
	7급	21,290	46,340																																																																		
직급별		하한액	상한액																																																																		
직종	직급																																																																				
일반직	센터장	서울시에서 정함																																																																			
	1급	43,641	72,353																																																																		
·	2급	41,126	71,828																																																																		
	3급	37,418	68,557																																																																		
계약직	4급	33,491	65,079																																																																		
	5급	29,674	60,310																																																																		
·	6급	25,725	55,367																																																																		
	7급	23,286	50,685																																																																		

【붙임 2 : 관련근거】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검토의견서

취업규칙 검토의견서

사업장명: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관련조항	검토내용
3편 인사 제40조 제2항 제1호	파면의 경우에 퇴직금을 1/2로 감액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임.
4편 보수 제14조 제1항 제4, 5호	근로기준법 제95조 상 감급의 제재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동 규정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보임. 연봉 공개에 따른 제재도 실질적으로 감급의 제재로 보이는 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작성일자 : 2018. 4. 10.

소 속 :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작성 자 : 공인노무사 이태강

(인)